

의과대학 학업성적 평가 내규

제정 2020. 4. 9.

개정 2024. 2. 6.

개정 2026. 3. 1.

제1장 총칙 <장 신설 2026.3.1>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졸업성과의 달성 여부를 공정하고 타당하게 판단하고, 학습 촉진 및 학생지도를 위한 체계적인 학생평가를 운영하기 위하여 평가의 원칙·방법·절차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.2.6.> <전문 개정 2026.3.1.>

제2조(적용범위) 이 내규는 의과대학에서 개설·운영하는 모든 교과목(단위과정), 임상실습, 비교과 교육과정 및 졸업요건 평가에 적용한다. <전문 개정 2026.3.1.>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“학생평가”란 학생의 지식·술기·태도 및 전문직업성 역량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평가활동을 말한다.

② “형성평가”란 학습 과정 중 제공되는 피드백을 통해 학습 향상을 돕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.

③ “발달평가”란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년별로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하는 형성적 목적의 평가를 말한다.

④ “총괄평가(중간평가/종합평가)”란 교과목(단위과정) 종료시점의 성취 수준을 판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하며, 학습분량을 고려하여 과정 중간에도 시행할 수 있다.

⑤ “시기평가”란 해당 시기 동안 시행된 다양한 평가자료를 종합하여 시기 성과 도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.

<전문 개정 2026.3.1.>

제2장 학생평가의 원칙 <장 신설 2026.3.1>

제4조(평가의 기본원칙) 학생평가는 다음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.

① 졸업성과 기반 평가: 모든 평가는 의과대학 졸업성과와 연계하여 시행한다.

② 학습촉진: 평가는 학습을 촉진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.

- ③ 공정성과 투명성: 평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하며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개한다.
 - ④ 타당도와 신뢰도: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다.
 - ⑤ 균형성: 형성평가·총괄평가 및 발달평가·시기평가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.
 - ⑥ 교육적 활용: 평가결과는 학생지도 및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.
- <전문 개정 2026.3.1.>

제5조(평가영역) 학생평가는 다음 각 호의 영역을 포함한다.

- 1. 지식 영역
- 2. 술기 및 수행능력 영역
- 3. 태도 및 전문직업성 영역

<전문 개정 2026.3.1.>

제3장 평가방법 <장 신설 2026.3.1.>

제6조(평가방법의 구성) 교과목(단위과정)은 다음 각 호의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
- 1. 필기시험 (객관식·단답형·서술형 등)
- 2. 구술평가 및 발표평가
- 3. 수행평가
- 4. 과제 및 보고서 평가
- 5. 태도 및 전문직업성 평가

<조 신설 2026.3.1.>

제7조(평가 운영) ① 교과목 담당교수(단위과정 책임교수, 임상실습 책임교수)는 운영계획서와 평가계획서(임상실습의 경우 실습지침서)를 교과목(단위과정) 시작 전에 제출한다.

② 운영계획서와 평가계획서에는 세부 평가방법,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운영 방식, 반영 비율 및 시험횟수 활용 계획을 포함한다.

③ 제출된 운영계획서와 평가계획서에 따라 평가를 시행한다.

<조 신설 2026.3.1.>

제8조(형성평가의 운영) ① 각 교과목(단위과정)은 최소 1회 이상의 형성평가를 실시한다.

② 형성평가는 성적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.

③ 형성평가 결과는 학생 상담 및 학습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.

<조 신설 2026.3.1.>

- 제9조(총괄평가의 운영)** ① 총괄평가(중간평가/종합평가)는 교과목(단위과정) 진행 중 또는 종료 시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.
- ② 시험, 재시험 및 추가시험은 의과대학 학사시행세칙(이하 ‘학사시행세칙’이라 한다.)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적용하여 실시한다.
- ③ 성취기준 설정 절차와 방법은 교과목 담당교수(단위과정 담당교수)와 수업 참여교수가 졸업성과와 학습성과를 고려하여 정한다.

<조 신설 2026.3.1.>

- 제10조(발달평가 및 시기평가의 운영)** 발달평가 및 시기평가는 별도의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부학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.

<조 신설 2026.3.1.>

제4장 성적처리

- 제11조(성적산정기준)** ① 과목별 성적 평가 등급은 학사시행세칙 제19조를 적용한다. 등급 및 평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6.3.1.>

등급	평점	실점수
A+	4.5	95 - 100
Ao	4.0	90 - 94
B+	3.5	85 - 89
Bo	3.0	80 - 84
C+	2.5	75 - 79
Co	2.0	70 - 74
F	0	0 - 69
P/F	통과/미통과	

- ② 평점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. 단, P/F 과목은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26.3.1.>

- 제12조(성적제출)** ① 교과목 담당교수(단위과정 담당교수)는 시험 종료 후 14일 이내 학사포탈시스템에 성적을 입력하고 출력·서명·날인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.

- ② 재시험은 실시 후 3일 이내 성적표를 서명·날인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.

<조 신설 2026.3.1.>

제5장 시험운영 및 횟수 <장 신설 2026.3.1.>

제13조(시험횟수의 원칙) ① 시험횟수는 학습 과부하를 방지하고 통합학습을 촉진하도록 설계한다.

② 동일 기간 내 시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일정을 조정한다.

<조 신설 2026.3.1.>

제14조(시험관리) ① 시험문항은 사전 검토와 문항분석을 통해 관리한다.

② 시험 보안 및 문항 유출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.

<조 신설 2026.3.1.>

제15조(보충교육 및 재시험) ① 성취기준 미달 학생에게는 보충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재시험은 학사시행세칙 제22조를 적용하여 실시한다.

<조 신설 2026.3.1.>

제6장 평가결과의 활용 <장 신설 2026.3.1.>

제16조(피드백 제공) ① 학생에게 개별 성취수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.

② 임상실습에서는 즉각적 구두 피드백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피드백 의견을 평가지나 포트폴리오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<조 신설 2026.3.1.>

제17조(교육과정 개선) ① 평가결과는 교과목(단위과정) 개선 및 교육과정 개편에 활용할 수 있다.

② 학생평가 운영과 품질관리는 시기별 과정운영위원회(의과대학 의학예비과정운영위원회 · 의학과정운영위원회 · 임상실습과정운영위원회 · 옴니버스과정운영위원회)가 담당한다.

③ 시기별 과정운영위원회는 단위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를 의과대학 교육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개선에 반영한다.

<조 신설 2026.3.1.>

제7장 학업부진학생 관리 및 평가윤리 <장 신설 2026.3.1.>

제18조(학업부진학생 관리) HABET학생적성 · 진로센터는 학업부진학생에게 지도교수 상담 및 HABET학생적성 · 진로센터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.

<조 신설 2026.3.1.>

제19조(평가윤리) ① 평가 과정에 있어 표절 및 부정행위를 금지한다.

- ② 제출된 과제는 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할 수 있다.
 - ③ 부정행위 적발 시 학칙에 따라 의과대학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한다.
- <조 신설 2026.3.1.>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내규(내규명칭, 제1조, 제3조)는 2024년 2월 6일부로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25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.